

## 선고 연기 이의 신청서

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(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, 박홍우 부장판사)  
원고 김명호,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, 중앙하이츠빌 105동 1504호  
(휴대폰:010-5590-8913)  
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,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

6월 16일 예정되었던 선고기일의, 7월 21일로의 연기 관련하여

### 민사소송법 제 151조(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)

“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,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. 다만,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

에 따라, 이의 신청합니다.

자세한 이의 신청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첫째: 원고는 선고 연기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.

둘째: 법원실무제요 제4절 특별항고, 1. 의의에(368쪽) 의하면,

“특별항고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재판의 확정<sup>1</sup>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.”

라고 하였고

셋째: 무엇보다도, 위 교수지위확인 사건은 이미 변론 종결되었으므로

### 민사소송법 제 207조 (선고기일)

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, 복잡



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  
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.

에서 명시되었듯이, 선고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종  
결된 날로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.

**결론:** 따라서 6월 23일 까지 선고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.

2006년 6월 19일

위 원고 김명호

<http://geocities.com/henrythegreatgod/tocourt.htm>

서울고등법원(민사 제2부 나) 귀중

배부번호 총무담당관실-6437  
(2006.6.19.09:34)

## 진정서

진정인: 김명호

서울시 동작구 상도 415 번지 중앙하이츠빌 105 동 1504 호  
전화 번호: 010-5590-8913

피진정인: 대법원장 이용훈

137-750,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3 동 967(서초로 219)

참조: 서울 고등법원 민사 2 부 박홍우 부장판사

대법원장님,

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대법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. 진정인은 10 년 전에 부당하게 책임용 탈락한 전 성대 수학과 교수 김명호 입니다.

제가 이렇게 대법원장님께 진정을 드리는 것은, 진정인의 사건

사건: 2005 나 84701 교수지위확인

원고: 김명호

피고: 성균관 대학교

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 2 합의부(부장판사 박홍우)가, 재판 선고지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위 사건은 5 월 26 일 변론 종결, 선고 기일이 6 월 16 일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. 그러나, 박홍우 재판장은 7 월 21 일로 연기함으로써, 진정인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.

만약 연기사유가, 민사소송법 제 448 조에 따라, 진정인이 (6 월 2 일)제출한 재항고 및 특별항고 결정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한다면,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박홍우 판사의 한 달여 연기 결정은 법 해석을 왜곡한